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휘



2021년 11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9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.

제21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

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①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근무성적 평정점 : 45%
2. 경력 평정점 : 10%
3. 교육마일리지(훈련성적평정) : 15%
4. 성과관리제 : 25%
5. 다면평가 : 5%
6. 가점 : 당해직급 포상

제4항 3호를 삭제한다.

제35조2(다면평가)

제3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다면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.
- ② 다면평가의 시행방법은 사장이 정한다.
- ③ 다면평가의 공정평가 방해행위는 엄금하며 제보 또는 행위 발각 시 감사부서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방해행위 인정 시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며 징계처리 한다.
- ④ 다면평가의 개인별 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하며 전체 결과는 사장에게만 보고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성 위 명	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	직 성 위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21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 ①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 1. 근무성적 평정점 : 45% 2. 경력 평정점 : 10% 3. <u>훈련성적 평정 및 포상평점(당해직급) : 20%</u> 4. 성과관리제 : 25% 5. <신설> 6. <신설> ② ~ ③ <생략>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일반직 3급은 최근 3년, 일반직 4급 ~ 7급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. 1. <생략> 2. <생략> 3. <u>최근 1년 근무성적 평정점</u> (<u>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</u>) <신설>	제21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 ①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 1. 근무성적 평정점 : 45% 2. 경력 평정점 : 10% 3. <u>교육마일리지(훈련성적평정) : 15%</u> 4. 성과관리제 : 25% 5. <u>다면평가 : 5%</u> 6. <u>가점 : 당해직급 포상</u> ② ~ ③ <현행과 같음>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현행과 같음> 2. <현행과 같음> 3. <삭제> 제35조2(다면평가) ① 다면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. ② 다면평가의 시행방법은 사장이 정한다. ③ 다면평가의 공정평가 방해행위는 엄금하며 제보 또는 행위 발각 시 감사부서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방해행위 인정 시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며 징계처리한다. ④ 다면평가의 개인별 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하며 전체 결과는 사장에게만 보고한다.	